

#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립)단체 승인 및 변경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평신도들이 서울대교구 내에서 단체 결성을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교회의 생활과 사명에 참여하고, 특별히 세상 사물의 질서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소명을 복음 정신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동시에 새로이 결성될 단체들에 대한 승인 및 감독과 그 변경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여타 수도회들의 재속 제3회에 속한 단체들이 갖는 고유 정관을 존중하면서도 서울대교구 내에서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들에 대한 업무도 다룬다.

**제2조 (평신도 단체의 주된 목적)** 평신도 단체들은 보다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공적 경배나 복음화 계획과 신심활동, 그리고 애덕사업, 현세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참조: 평신도 교령 18~21항).

## 제2장 결성 및 인준

**제3조 (단체결성)** 평신도들은 이 규정 제2조에서 제시된 목적을 전제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하느님 나라를 건설,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대하여 다양한 사도직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지닌다(참조: 교회법 제215조).

**제4조 (가톨릭 및 천주교 명칭사용의 제한)** 단체는 교구장의 인준을 거침으로써 교구 내 가톨릭 단체로 인정되며, 인준을 받지 않은 단체는 ‘가톨릭’이나 ‘천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참조: 교회법 제300조; 평신도교령 24항;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212조 3항).

### 제5조 (신규단체의 인준신청)

① 인준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각각 3부씩을 사목국 단체사목부에 제출한다:

1. 단체 인준 신청서
2. 회칙(정관)
3. 대표자 및 임원명단(회원수)
4. 조직기구표
5. 연간 활동계획서

6. 단체조직의 경과(활동, 회의록, 재정보고 등)
  7. 상기서류들에 대한 담당사제의 의견서
- ② 접수된 문서들은 교구문서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교구사무처에 일괄 보관된다.

**제6조(승인심의절차)**

- ① 사목국 단체사목부 사제는 접수된 인준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처에 제출한다.
- ② 교구 사무처는 단체사목부가 제출한 의견서(사목적 차원)와 함께 사무처 고유의 의견서(문서형식적 차원)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평신도(사립)단체인준심사위원회(이하 '인준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인준심사위원회(위원장: 총대리 주교)는 제출된 인준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주교평의회에 상정한다. 인준심사위원회의 회칙은 별도로 정한다.
- ④ 교구장은 주교평의회 의견에 참고하여 관련 단체를 승인하고 그 승인교령을 허락한다.
- ⑤ 신규단체에 대한 최초 인준의 효력은 인준일로부터 3년이며 교구장은 최초 인준 3년 동안의 단체 활동에 대한 다각적 심의를 통해 최종승인 교령을 허락할 수 있다.

**제7조 (회장 및 담당사제 임명권)** 결성할 단체들의 회장은 고유정관에 따라 임명되며 담당사제는 교구사제들의 임면절차에 따라 교구장이 임명한다.

**제8조 (단체의 정관 개정)** 각 단체는 필요에 따라 회칙을 개정할 수 있으나, 회칙 개정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사제의 확인 후 제6조의 심의절차를 거쳐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① 회칙 개정 인준 신청서
- ② 구회칙
- ③ 개정회칙
- ④ 회칙 개정 대조표
- ⑤ 담당사제 의견서

**제9조 (승인된 단체들의 권리와 의무)** 합법적으로 승인된 단체들은 교회법과 승인된 정관에서 향유하는 권리 및 의무 외에도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① '가톨릭' 혹은 '천주교'란 명칭의 사용
- ② 교구 공식 홍보매체를 통한 단체 활동 홍보
- ③ 교구청 직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적합한 신청 및 그 적절한 사용
- ④ 교구 주소록 및 홍보물, 한국 천주교 주소록에 등재
- ⑤ 단체 간 마찰에 대한 교회권위의 중재 요청
- ⑥ 교구와 지구 본당과의 협력관계와 교구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석할 의무
- ⑦ 제 단체 고유목적달성을 해치지 않는 한, 교구의 여러 활동들에 있어서 협조할 의무
- ⑧ 정해진 양식에 따른 매월 활동 및 재정보고서 제출의무
- ⑨ 연간 활동 계획서, 단체현황, 예·결산 보고서 제출의무

- ⑩ 정기총회 회의록 제출의무
- ⑪ 그 밖의 필요시 교구의 합법적 권위가 요구하는 서류 및 보고서 제출의무

### 제3장 감독 및 후원

#### 제10조 (교구직권자의 감독권)

- ① 모든 단체는 그 고유목적은 온전히 달성하고 목적이외의 활동을 통한 남용이 관련단체에 스며들지 않도록 교구직권자의 감독권에 예속된다.
- ② 특히 각 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들은 교구 출판물검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문제없음(nihil obstat)’과 ‘출판승인(imprimatur)’을 서면으로 받은 후 출판 및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 (단체 재산관리)

- ① 단체의 재산 취득 및 관리는 그 고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나 목적에 적합한 활동에 그 재산이 사용되는가에 대한 감독권은 교구 직권자에게 있다.
- ② 회계와 세무에 대한 사항은 교회법과 국법을 준수하면서 처리되어야 한다.
- ③ 연 1회 교구에 제출되는 단체의 예·결산 보고서에는 전문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④ 회계장부는 교구 지원금에 대한 예·결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에 사용되었던 모든 자금에 대한 구체적 기안 및 결산을 통한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자금의 구체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 (단체지원)** 교구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단체는 담당사제와 단체사무부 사제의 의견서 및 예산안을 교구 관리국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지원받을 수 있고 다음 각 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① 예산이 심의 통과되었어도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무렵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세부내역이 설명되어 있는 기안을 작성함.
- ② 작성된 기안은 담당사제와 단체사무부 사제의 승인을 거친 후 교구 관리국에서 지출 승인 후 집행 가능함.
- ③ 교구 지원금에 대한 결산은 지원금 내역과 관련행사 총 경비 내역을 기록해야 함.

### 제4장 단체의 합병 및 분할과 그 활동의 정지 및 소멸

**제13조 (단체의 합병)** 기존의 여러 단체들이 합병을 원할 경우, 합병된 단체에 대한 승인도 신규단체승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단, 기존의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책무들도 합병된 단체로 이관되거나 고유목적기금이나 목적헌금들을 헌납한 기부자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참조: 교회법 제121조).

**제14조 (단체의 분할)** 기존의 한 단체가 분할하여 또 다른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도 신규단체승인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단, 분할 가능한 재산과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처리는 교회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단체활동의 정지 및 소멸)**

- ① 교구 인준 각 단체는 그 고유 정관이 정한 소멸방식에 의하여 해체될 수 있다.
- ② 그 활동이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회의 교리나 규율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을 야기할 경우, 그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교구 직권자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권고와 경고를 내릴 수 있다.
- ③ 교구 직권자들의 권고나 경고를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교구장 주교는 인준심사위원회와 주교평의회 의견 참조하여 단체 활동 정지 및 폐쇄교령을 내릴 수 있다.

**제16조 (소멸된 단체의 재산)** 소멸된 단체의 재산의 청산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참조: 교회법 제120조, 제123조, 제320조, 제326조).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교구장이 인준한 날(2009. 10. 26)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관례에 따른다.